

## 議案檢討報告書

1. 發議 率는 提出者 : 徐允官 議員外 4人
2. 件 名 : 大田直轄市 汚水·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 
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
3. 案件要旨 : 別添參照
4. 檢討意見 : 別添參照

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.

1994年 8月 日

文教·社會委員會

專門委員金鎮鑑



大田直轄市污水·糞尿及畜產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## 檢討報告書

1994 . 8 .

文 教 社 會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# 大田直轄市污水·糞尿及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### 檢 討 報 告

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8月 20日 徐 允 官 議員外 4人으로  
부터 提出되어 1994年 8月 2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#### 1. 提 案 理 由

- 糞尿등의 衛生 處理時 排出者로부터 徵收하는 處理場 處理費가 現實과 맞지 않아 미비한 自體施設의 擴充은 물론 處理場의 運營費에도 뜻미치는 實情에 있으므로
- 이중 原因者 負擔原則에 立脚하여 現實化하므로써 地方財政擴充에 寄與함은 물론 自體施設에 대한 補強財源으로도 活用되도록 하여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環境問題에 적극 對處코자함.

#### 2. 主 要 骨 子

蒐集된 糞尿의 衛生處理時 排出者로 부터 徵收하고 있는 處理場 處理費를 1ℓ 당 1원에서 5원으로 上向調整.

### 3. 檢討意見

- 本案件은 蔊集·運搬된 糞尿에 대하여 衛生處理場에서 衛生處理하는 境遇에 徵收하는 處理場 處理費를 現實에 맞게 上向調整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
- 衛生 處理場에서의 糞尿處理에 따른 處理費 徵收에 있어서는 「污水·糞尿및畜產廢水處理에 관한 法19條 第6項」의 規定에 의하여 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糞尿 蔊集·運搬手數料에 包含하여 徵收到록 되어 있는바
- 現行 衛生處理場에서 1ℓ에 1원씩 徵收하고 있는 處理費는 '85年度에 策定된 金額으로 現在 37.5%의 衛生處理場 財政自立度를 漸進的으로 높여가야 하는 現實情을勘案할때 本 條例案을 改正하여 處理場 處理費를 上向調整코자 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으나
- '91. 6月 糞尿菟集 手數料凍結以後 수차례에 걸친 收去業者的 手數料 引上要求는 收容치 않고 衛生處理場의 手數料만 500% 引上하는데 따른 收去業者들의 不滿問題와
- 비록 1ℓ 당 5원이라고는 하지만 1말(18ℓ)의 경우 90원으로 72원이 引上되어 4인 가족을 基準으로 가구당 년 6,000 ~ 7,000원의 住民負擔을 안겨주는 引上要因 發生으로 他 物價引上등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解消策이 뒤따라져야 될 것으로 思料됩니다.